

202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등록 안내

202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법정의무교육 개요

- 교육대상: 2024 선발 학교예술강사 중 근로계약체결자
- 교육 이수기간: 근로계약 기간 내
- 교육방법: 교육진흥원 온라인 아르떼 아카데미 동영상 시청
- 교육비: 전체 교육과목(5시간) 이수 시, 75,000원 지급
- 교육내용 및 일정

과목명	시간	일정
[2024 법정필수교육] 4대 폭력 예방	4시간	[1분기] 5. 8.(수) ~ 6. 30.(일) [3분기] 7. 1.(월) ~ 9. 30.(월) [4분기] 10. 1.(화) ~ 12. 31.(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	1시간	[1분기] 5. 8.(수) ~ 6. 30.(일) [3분기] 7. 1.(월) ~ 9. 30.(월) [4분기] 10. 1.(화) ~ 12. 31.(화)

□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등록

① 근로계약 및 출강시수 확인	※ 근로계약기간 외 이수 시 불인정 ※ 출강시수와 교육시간을 합하여 월 59시수 초과 불가
② 이수계획 등록	○ 등록처: Aschool(https://aschool.arte.or.kr) ○ 등록방법: 로그인 → 인사/복무 → 법정의무교육관리 → 법정의무교육 이수 계획 → 등록
③ 교육 이수 및 이수증 발급	○ 이수/발급처: 온라인 아르떼 아카데미(https://arte.hunet.or.kr) ○ 이수/발급방법: [붙임] 연수 신청 및 이수증 발급방법 참고
④ 교육비 신청	○ 신청처: Aschool(https://aschool.arte.or.kr) ○ 신청방법: 로그인 → 인사/복무 → 법정의무교육관리 → 법정의무교육비 신청 → 등록

※필수 확인사항※

8월 13일(화) 이전, 근로계약기간 내 출강시수와 교육시간을 합하여 월 59시수를 초과하지 않고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으나 현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④교육비 신청부터 진행

□ 유의사항

- 근로계약기간 내 교육진흥원이 제공한 교육을 출강시수와 교육시간을 합하여 월 59시수 이내인 월에 이수해야 함
 - ↳ 만약 59시수가 초과되는 월에 이수한 경우, 남아있는 근로계약기간 중 초과하지 않는 월이 있는 분기에 재수강 필요
 - ↳ 교육은 분기별로 운영되므로 분기 내 재수강은 발급일이 변경되지 않음
예) 7월 이수하였으나 59시수 초과일 경우, 4분기(10,11,12월)에 재수강
- 근로계약이 연간 갑작스런 배치포기로 변동이 되었더라도 5. 8.(수) ~ 12. 31.(화) 중 근로계약 일자가 포함된다면 이수 대상자입니다.
 - ↳ 이수증 발급일이 모든 (변경)근로계약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

예) 여러번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기간 1차 7.1~10.31 / 2차 7.1~9.30

- 이수증 발급일 10.10 > 1차 계약기간 안에 포함되므로 인정

- 이수증 발급일 11.10 > 1,2차 계약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 법정 의무교육은 복무관리에 반영되며 세부내용은 향후 '24 학생만족도조사 및 복무관리 가이드 참고

□ Q&A

Q. 교육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교육비는 언제 입금되나요?

A. 교육비 신청 화면에 기재된 귀속월의 다음달 13일에 입금됩니다.

Q. 근로계약기간 내 법정 의무교육은 이수했는데 이수증을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는데 이수증 제출해도 되나요?

A. 근로계약기간 내 출강시수와 교육시간을 합하여 월 59시수 이내로 이수했다면 이수증 등록 및 교육비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시스템(Aschool) → 인사/복무 → 법정 의무교육관리 → 법정 의무교육비 신청

Q. 근로계약 체결했는데 근로계약 시작일은 다음주입니다. 미리 법정 의무교육 이수해도 되나요?

A. 체결일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이수하셔야 합니다.

Q. 근로계약 종료되었는데 법정 의무교육 이수해도 되나요?

A.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자가 아닙니다. 추가 배치를 통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기간 내 출강시수와 교육시간을 합하여 월 59시수 이내인 월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Q. 이번 달은 학교에 59시수 출강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들어도 되나요?

A. 출강시수와 교육시간을 합하여 월 59시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수 조정이 가능하신 경우, 변경월별출강계획서 제출 및 변경계약 체결 후 출강시수와 교육시간을 합하여 월 59시수 이내인 월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Q. 다른 곳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인정되나요?

A. 법정 의무교육은 사업장 기준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한 법정 의무교육만 인정됩니다.

Q. 법정 의무교육을 하루 안에 다 이수해야 하나요? 나눠서 이수해도 되나요?

A. 근로계약기간 내 출강시수와 교육시간을 합하여 월 59시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Q. 휴가(휴직)중인데 법정 의무교육 들어야 하나요?

A. 휴가(휴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자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내 이수하시면 됩니다.

□ 관련 문의처

운영기관	대표전화	대표메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031-467-8473	skart@sungkyul.ac.kr